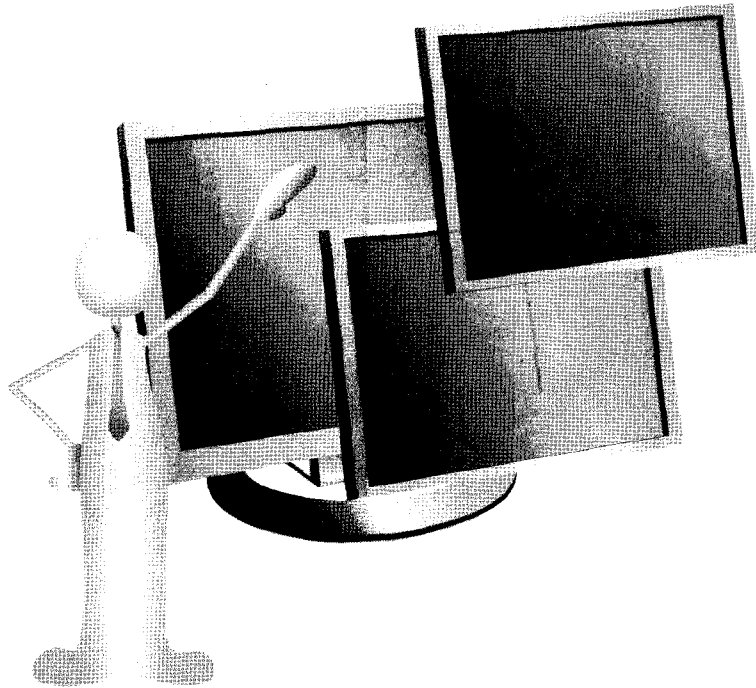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발표했다. 관련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도 도입

규제 신설 내용

위탁운송시의 안전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운송사업 및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법령 위반시 행정조치나 처벌이 곤란함
 - 액법 시행규칙을 개정('09. 9. 25)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벌크로리를 보유한 운수사업자도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사업 즉 위탁운송사업을 허용하였으나,
 - 액법에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나 등록 등의 관리제도가 없어 액법의 안전관련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고,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행정조치나 처벌이 곤란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
 - 위탁운송과정에서의 안전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의 경우 결격사유와 허가의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등록제도 도입시 형평성 확보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등에 있어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결격사유와 등록의 취소제도 도입필요
- 타사업자 사례 및 해외사례
 -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액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
 - 일본의 경우 벌크로리를 충전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공급설비(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를 충전하려고 하는 자는 충전설비 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1항)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위탁운송시 안전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과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1개 위탁운송사업소당 등록비용은 1만5천원이고, 규제대상 업소수는 약 10개소로 추정됨
- 편익분석
 -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으로 인한 안전 확보, 유통질서 확립 및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라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위탁운송사업자가 지불하게 되는 규제비용에 비해 월등히 클 것으로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타사업자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시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제도는 안전 확보, 유통질서 확립 및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액법 시행규칙 개정(09. 9. 25)으로 위탁운송사업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의 시행에 있어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자 공표 제도 도입

규제 강화 내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 기준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고 사업자의 품질기준 위반 행위가 지속됨
 -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품질기준 위반 사업자를 알 수 없어 충전소 등의 선택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 소비자의 충전소 선택시 품질기준 위반 여부가 고려되지 않아 충전사업자의 품질기준 위반 행위가 지속됨

〈최근 5년간 품질검사 현황〉

구분	'05	'06	'07	'08	'09
검사건수	5,304	5,791	4,642	4,842	4,859
위반건수	55(1.04%)	53(0.92%)	27(0.58%)	25(0.52%)	27(0.56%)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소비자 보호와 품질기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공표제도 도입 필요
 -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품질기준 위반행위 의 근절을 위해 품질기준 위반업소 공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타법사례
 -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품질기준 위반자를 공표할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소비자 보호와 품질기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공표제도 도입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품질기준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타법사례 등을 감안시 품질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표 제도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품질기준 위반사업자가 공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 편익분석
 -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없이 소비자 안전확보와 품질기준 위반행위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 발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소비자 안전확보와 품질기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석유제품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품질기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제품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 도입

규제 신설 내용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함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 관련 제도 미흡
 -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에 근거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 도모와 석유제품과 규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관련 규정의 신설 필요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석유제품과 액화석유가스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1호)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판매가격의 조사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액법에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관련 규정의 신설 필요
- 타법 사례
 -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에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액법에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 관련 규정의 신설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기 운영중인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법적 미

비점을 보완하며, 석유제품과의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액법에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 관련 규정의 신설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1호)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판매가격의 조사 및 공개 제도가 한국석유공사에 의해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등)으로 기 운영되고 있고,
- 조사가 보고로 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동 규정의 신설로 인해 피규제자(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약 7,000개 업소)에게 부과되는 비용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편익분석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관련 규정의 신설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 도모와 기 운영중인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 보완이라는 경제적·사회적 편익 발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의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매가격 공개시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등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1호)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판매가격의 조사 및 공개 제도가 한국석유공사에 의해 전자적인 방법(인터넷 등)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
- 동 신설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